

「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2월 27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9년 3월 5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4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19년 3월 5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보건사업과장)

### 가. 제안이유

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증가 및 치매환자 국가책임제 수행 등을 위한 취약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선제적 대응하고자, 지역보건법 제30조의 근거에 의하여 보건의료사업 업무중 일부를 유능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의료인(봉직의)에게 대행하여 운영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, 업무대행자 선정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3조)
- 결격사유, 계약의 체결 및 해지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5조)
- 실비보조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8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적인 의사를 채용하여 공중보건의사 수급불균형과 감소에 대응하고, 지역주민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,
-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안 제3조에서는 업무대행자 선정에 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계약체결 및 해지에 관한사항 안 제6조에서는 실비보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.
- 진료의 연속성에 따른 환자의 심리적 안정이나 진료에 대한 책임성 등 진료업무 대행의사 채용에 따른 장점이 있으나,
-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수혜정도, 입원환자 케어를 위한 인력수급 대책, 지역 일반 병·의원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등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2018. 9. 14일 의회 사전설명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평창군 주민의 효과적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업무대행자”란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「지역보건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0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과적 업무대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선정·지정하는 「의료법」 제2조의 의료인(이하 “의료인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**제3조(업무대행자 선정 등)**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이에 신청하는 의료인 또는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한 의료인 중에서 해당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② 보건의료원장은 업무대행자가 필요할 경우 그 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제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해당 업무대행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.

③ 업무대행자가 보건의료원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이력서

2. 그 밖에 면허·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의사면허증, 전문의자격증,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)

**제4조(결격사유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.

1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

**제5조(계약체결 및 해지)**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선정·지정한 때에는 해당 업무대행계약(이하 “계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해야 한다.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대행계약서(이하 “계약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.

②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군수는 업무대행자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해당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.

③ 계약서의 각 매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을 각인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해당 계약당사자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.

④ 계약서에는 해당 업무대행의 장소, 업무범위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명기해야 한다.

⑤ 군수는 계약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해지일 2개월 전까지 필요한 해지요청(통보)을 해야 한다.

1. 의료인의 자격을 상실한 때
2.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근무에 불성실한 때
3. 건강상 업무대행을 지속할 수 없는 때
4. 불친절 등 업무로 인한 중대한 민원이 야기된 때
5. 예산사정상 해당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때

제6조(실비보조) 군수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보조하는 실비(계약서에서 “업무대행경비”라 한다)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, 기술의 특수성,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.

제7조(지도·감독) 군수는 업무대행자의 수행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·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## 평창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신청서

- 성 명 :
- 생년월일(성별) : ( 남, 여 ) :
- 주 소 :

대행의료업무	직 종	면허번호 (자격번호)	비 고

위와 같이 「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을 신청합니다.

- 붙임서류 : 1. 이력서  
2. 면허·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의사면허증, 전문의자격증, 경력증명서 등)

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평 창 군 수 귀 하

[별지 제2호서식]

## 평창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계약서

「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“평창군”과 “업무대행자”와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다.

### 제1조(계약당사자)

평창군 : 평창군수

업무대행자 : 의료인

주 소 :

성 명 :

생년월일(성별) : ( 남, 여 )

제2조(대행업무) 본 계약에 따라 “업무대행자”가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
- 2.

제3조(계약기간)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.

제4조(업무대행경비) 업무대행 총 경비는 월 원(년 원)으로 한다.

제5조(업무대행경비의 지급) ① “평창군수”는 “업무대행자”의 업무대행경비를 매월 말일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② “평창군수”는 업무대행경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 한다.

제6조(의무) ① “평창군수”는 “업무대행자”의 보건의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② “업무대행자”는 「의료법」 등이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③ “업무대행자”의 업무대행일 및 업무대행 시간은 「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에 준한다.

제7조(업무대행의 장소) ① “평창군수”는 “업무대행자”에게 업무대행을 할

수 있도록 보건의료원 내에 해당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.

제8조(계약의 해지) “평창군수”와 “업무대행자”는 이 조례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한다.

제9조(그 밖의 계약조건)

- 가. “업무대행자”는 해당 업무대행 수행에 있어서 “평창군수”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나. “업무대행자”는 법령 및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“평창군수”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.
- 다.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때에는 “평창군수”의 정당한 해석을 우선하여 따라야 한다.
- 라. “업무대행자”는 계약기간 동안 해당 근무지역에 거주해야 한다.
- 마. “업무대행자”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“평창군수”가 입게 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본 계약체결 후 “평창군수”가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으로 “평창군수”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.

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19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

평 창 군 :        평 창 군 수        (인)

업무대행자 :        의 료 인

주 소 :

성 명 :        (인)

생년월일 :